
2020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 "2020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추후 발표되는『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수시 및 정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대학교

I. 주요 변경사항

1. 전형별 모집인원 조정

(단위: 명)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비고
수시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전형)	60	60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사향인재추천 전형)	30	30	
		학생부종합(교직인성우수자 전형)	120	100	20명 감원
		학생부종합(다문화가정자녀 전형)	5	5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 전형)	10	10	
		학생부종합(기회균형선발 전형)	15	15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전형)	4	4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 전형)	5	5	
		기타	기타(재외국민 전형)	7	7
	기타(북한이탈학생 전형)		-	3	2020학년도 신설
소계			256	239	
정시	수능위주	수능(일반전형)	135	155	20명 증원
	소계			135	155
합계			391	394	

2. 수능 최저학력기준

○ 수시: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전형), 학생부종합(교직원성우수자 전형)

-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 합 9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 단, 수학 가형과 과탐을 선택한 경우 4개 영역 합 11등급이내

○ 정시: 수능(일반전형)

-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평가와 별개로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

3. 전형요소별 배점 및 전형단계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전형요소 실질 반영률 및 전형단계
수시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전형)	1단계(2배수) : 학생부 교과 100 2 단계 : 1단계 성적 + 면접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사향인재추천 전형)	1단계(2배수) : 서류 100 (학생부, 교사추천서2부, 자기소개서) 2단계 :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학생부종합(교직원성우수자 전형)	1단계(2배수) : 서류 100 (학생부, 자기소개서) 2단계 :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학생부종합(다문화가정자녀 전형)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 전형)	
		학생부종합(기회균형선발 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전형)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 전형)	
	기타	기타(재외국민 전형)	
		기타(북한이탈학생 전형)	
정시	수능위주	수능(일반전형)	1단계(2배수) : 수능 100 2단계 : 수능 80 + 면접 20

II. 수능 최저학력기준

시기	전형명	최저기준
수시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전형)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탐/과탐) 4개 영역의 합이 9등급 이내 (단, 수학 가와 과탐을 선택한 경우 4개 영역의 합이 11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 탐구영역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 제2외국어/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학생부종합(교직원성우수자 전형)	
	학생부종합(사향인재추천 전형)	수능 최저 없음
	학생부종합(다문화가정자녀 전형)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 전형)	
	학생부종합(기회균형선발 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전형)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 전형)	
	기타(재외국민 전형)	
	기타(북한이탈학생 전형)	
정시 (나)군	수능(일반전형)	

Ⅲ. 지원자격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수시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전형)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2020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로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나. 소속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고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학생부종합교과인성우수자 전형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학생부종합사형인재추천 전형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2020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 나. 교사 2인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종합다문화가정자녀 전형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2015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2014년 4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 전형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등록을 필한 자 (단,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제외)
	학생부종합기하균형선발 전형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제외),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한 소년소녀가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 가장(가정위탁 포함) 또는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전형)	<p>-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p> <p>가. 2015년 2월 이후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자</p> <p>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부모가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부 또는 모만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 소재 학교 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 부·모·학생의 거주지는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재학 당시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함 ※ 개정 고등교육법시행령(2011년 10월 17일)에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으로 구분된 지역 소재의 중·고등학교 출신자 ※ 부모거주지, 학생거주지, 학교소재지는 동일한 읍·면이 아니어도 가능함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 전형)	<p>-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p> <p>가. 2015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출신자는 2014년 4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p>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참전 유공자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기타(재외국민 전형)	<p>-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예정자 포함)한 재외국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수학 연한과 관계없이 인정 ※ 전학 등의 사유로 재학 기간이 12년에서 1학기가 부족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 인정
	기타(북한이탈학생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북한이탈학생
정시 (나)군	수능(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